

# 미국의 통상전략 분석 (지적소유권 전략을 중심으로)

池 庚 鏞/韓國電子通信研究所 情報經營研究室 研究員

## I. 서 론

산업사회에서의 기술자산은 주로 하드웨어의 제조를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는 공업소유권적 접근으로써 가능하였고 또 충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up>1)</sup> 개념은 전통적 공업소유권의 개념을 벗어나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즉, 경제시스템이 공업경제시스템으로부터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 시스템으로<sup>2)</sup> 이행함에 따라 독창적인 지식과 기술의 가치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관계로 오늘에 이르러 지적소유권의 개념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Know-how, 기타 인간의 지적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폭넓게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적자산의 생산과 활용이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해지자 80년대에 들어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응용되는 지적자산에 대한 국가간 권리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급기야 우리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앞으로 기술혁신의 전개에 따라 지적소유권의 개념이 내연적·외연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 확실하다고 볼 때 정보경제에서의 지적소유권 문제 해결은 산업사회에서와 같은 공업소유권적 접근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동시에 지적소유권보호 문제는 국내적 보호영역을 넘어 통상문제(Trade Issue)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국제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우리와 같이 기술을 수입하는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전략을 면밀히 분석,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의 기술평가국(OTA;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은 “지적소유권이란 지적, 과학적 혹은 예술적 분야의 창작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하면서<sup>3)</sup> 다음과 같이 지적자산을 3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고 있다. 제Ⅰ의 유형은 회화, 조각, 소설, 음악과 같은 예술작품(Works of Art)이고, 제Ⅱ의 유형은 지도, 통계, 미가공 데이터 등의 사실전달작품(Works of Fact)이며, 마지막으로 제Ⅲ의 유형은 반도체 칩, 컴퓨터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능

주1) 결국 유사한 개념이나, 필자는 Intellectual Property를 지적자산으로, Intellectual Property Right를 지적소유권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며, 전자는 거래대상으로서의 지적창조물에 대한 자산적 가치를, 후자는 그 자산적 가치에 대한 창조자의 배타적 권리로서 소유권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으로 구분하고 싶다.

주2) 정보경제시스템이란 국민경제에 있어서 지적자산 또는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자본적 가치와 같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작용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의미한다 : 지경용, “정보경제의 기반형성에 있어서의 일고찰”, 전자통신, Vol. 8 No. 4,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7. 1.

주3) O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 A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1986. 4. : Nikkei Computer, 1986. 11. 24, p. 73에서 제인용.

작품(Works of Function)이다.<sup>3)</sup>

본고에서는 지적소유권의 범위를 좁혀 OTA의 분류 중 비전자적 정보(서적, 회화 등)를 제외한 전자적 정보(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즉, 제Ⅲ의 유형을 중심으로 각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주요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전략

상품무역분야에서 신보호주의의 등장과 함께 80년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통상협상방식이 “쌍무적 상호주의”인데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규정하는 상호주의원칙을 무시한 협상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쌍무적 상호주의는 “미국이 교역상대국의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상대국이 미국의 상품, 서비스 및 투자를 대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해당 외국상품에 대하여 자국상품이 외국시장에서 받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행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sup>4)</sup>

이러한 새로운 상호주의 아래서는 관세인하 또는 비관세장벽 경감 등의 무역협상 결과가 당사자 쌍방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호혜적인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GATT상의 호혜주의원칙과는 달리 보복적 색채가 강하고 무역제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GATT원칙의 위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정보가 국가자원(National Resources)이라는 인식하에 양면적인 기술정보유통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바,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기술 개발프로젝트에서 얻은 성과를 민간에 활발히 이전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기술이전 자체를 기피하거나 소위 크로스라이센싱(Cross - Licensing)의 형식으로 상대국 기술을 기술이전의 대가로 요구하는 기술 보호주의적인 사

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바로 쌍무적상호주의가 기존의 상품무역분야 외에 기술무역분야에도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무역에 대한 GATT의 기본입장을 살펴본 후,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전략, 그리고 미·일의 반도체 마찰에 따른 일본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국제기구의 동향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특히 GATT의 우루과이아운드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요 잇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소유권 범위의 문제이다. GATT에서는 이를 표면화하여 새로이 검토한다는 것은 GATT의 목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기존의 파리조약 등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규범아래서는 구체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으므로 급기야 지적소유권이 통상문제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일된 지적소유권의 보호법체계 확립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로서 각국은 지적소유권에 대한 충분한 법제도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며 설사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보호대상과 보호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국제적인 통일적 보호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째,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벌칙규정의 문제이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국제규칙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벌칙규정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개도국은 선진국의 특허 등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존의 저작권 국제규범과 같이 특혜조항을 두어야 하는가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루과이아운드에서의 합의된 GATT 각료회담은 향후 국제무역질서의 향방을 규정하는 것

주4) 박만승 외 2인, GATT를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질서의 전개방향과 우리의 대응,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984, p. 2.

표 1. 우루파이라운드에서의 GATT 각료선언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협상의 목적	모든 회원국에 이익이 되도록 세계무역을 가일층 확대하고 자유화를 도모한다.
협상의 일반원칙	협상은 모든 회원국의 상호이익을 위한 GATT의 원칙과 상기 협상목적에 부합하도록 명료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협상결과의 시행은 일괄타결(A 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하되 정식 타결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합의된 사항은 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협상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 구체적인 협상계획 및 추진절차의 수립, 협상의 추진 감독</li> <li>○ 상품무역협상그룹(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 : 실제 협상업무 수행</li> <li>○ 서비스무역협상그룹(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 "</li> </ul>
보호무역조치의 철폐 및 동결	뉴라운드 협상 참가국은 협상기간중 GATT 원칙에 위반되는 추가적인 무역규제를 행할 수 없다(Standstill). 협상종결전 합의된 기간에 GATT 원칙에 위배하는 모든 무역규제 또는 왜곡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또는 협상목적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Rollback).
협상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및 비관세 조치</li> <li>○ 농산물교역</li> <li>○ 긴급 수입제한 조치</li> <li>○ 위조상품 규제 및 지적 소유권의 보호</li> <li>○ 무역관련투자</li> <li>○ 서비스 무역 기타</li> </ul>

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무역기구에서도 서비스 무역협상그룹(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근본적으로는 기술무역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GATT에서는 우루파이라운드의 현안사항으로서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협의를 거쳐야 할 주요 주제를 결정하였다.

그 주요사항은 첫째, 선진각국간의 지적소유권제도의 개정 및 격차 조정<sup>5)</sup>, 둘째 개발도상국의 지적소유권제도 확립 및 보호의 강화, 세째 미국의 특히 침해품, 즉, 불공정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관세법 337조)<sup>6)</sup>에 대한 대항조치 등이다. 그러나 이를 문제에 대하여는 각국의 공업발전단계가 상이하므로 참가국들의 이해의 대립이 예상된다.

주5) 각국의 제도가 상이한 예로서 각국간의 발명시점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발명시점에서 권리의 보호하는 선발명주의(先發明主義)를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 및 EC에서는 출원시점에서 권리의 보호하는 선원주의(先願主義)를택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규정이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주6) 개정된 미국의 관세법 337조는 기업측의 피해입증이 없이도 ITC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 저해효과가 클 것이 예상되어 국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규정이다.

## 2. 미 국

### 가. 지적소유권 보호 요구의 경제적 배경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미국은 기술라이센스사업을 비롯한 많은 서비스업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기술평가국(OTA)에 의하면 미국은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 엔지니어링 및 건설, 정보산업, 기술라이센스 등 4개 분야에서 특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은 이 4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무역흑자로 무역역조를 어느 정도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국제통신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서비스업이 국내 경제의 다른 부문을 간접적으로 잘 자극하게 되면 산업전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상무성(DOC; Department of Commerce)의 계산에 의하면 미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전체 서비스업의 비중은 1984년에 438억弗에 이르러 총수출의 17%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OTA의 계산으로는 최고 690억~910억Fr로 총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sup>7)</sup> 미국의 서비스업 성장률 및 대GNP 비중을 살펴보면 표 2 및 표 3과 같다.

한편으로 지적자산을 방대히 축적하고 있는 미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성립시키는 일은 레이건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책정되어 있다. 특히 지적소유권에 관한 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통상전략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미국 기술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sup>8)</sup>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라이센스 사업의 해외진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방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

표 2. 미국 서비스업 및 GNP의 성장률

연평균성장률	상품	서비스	건설*	GNP
1971~85	9.0	10.4	9.0	9.6
71~75	9.7	9.0	6.2	9.7
76~80	10.1	12.0	12.8	11.3
81~85	5.5	8.1	7.4	6.9

\* : 관련 정부지출부문과 민간기업의 주택 비주택부문을 포함한 것임.

자료 : Dep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각년도; 방용태, “미국의 서비스산업 비대화와 탈공업화”, 세계경제동향, 1987. 7, pp. 32~33에서 재인용.

표 3. 서비스 부문별 대GNP 비중(1985)

부문	운송	통신	전기·가스	도소매업	금융등*	기타**
비중	3.7	2.7	3.1	16.5	15.8	16.2

\* : 금융, 보험, 부동산업

\*\* : 기타 민간 서비스로서 숙박업·수리업·병원업 포함  
자료 : 上同, 1986

왔으며, 그 결과 축적된 지적자산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미국내에서는 이렇게 축적된 지적자산이 국제적으로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 있다는 비난이 높았음이 사실이며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지적자산이 수출 또는 기술이전이라는 형태로 해외로 유출되었고, 권리보호제도가 불충분한 개도국에서는 이를 이용한 복제상품이 범람하게 되었다. 결국 모조품을 배제하여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겠다는 미국은 급기야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강화를 선진국과 개도국에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sup>9)</sup>

#### 나. 미국 지적소유권정책의 변화과정

##### 1) 첨단기술 해외유출 규제의 연혁

이제까지의 미국 첨단기술의 해외유출규제 연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2 단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1 단계는 냉전으로부터 해빙되던 1954년 이후 미소간의 기술교류가 진전되다가, 1972년 닉슨과 브레즈네프 사이의 “미소관계의 원칙”이 서명되면서 과학기술의 교류가 본격 개시되었으나 이러한 화해의 무드는 1976년 양골라내전을 계기로 양적교류가 축소되면서 1979년 아프가니스탄 사건으로 미소간의 과학기술교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첨단기술유출에 대한 주요 규제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용으로 전용가능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은 국내 발표까지도 제한한다. 둘째, 국방성은 군사기밀기술(a List of Military Critical Technologies)에 대하여는 공산권뿐만 아니라 서방측에 대하여도 그 유출을 제한한다. 세째,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발명의 발표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 2 단계는 미국 재정적자의 위기가 인식되기 시작하던 197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서, 미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첨단기술정보의 해외유출을 억제하면서부터이다. 즉, 1980년 대초부터 미국 “수출관리법”을 확대해석 적용하여 군사에 관한 미국 국내학회에의 참가는 미국인에만

주7) OTA,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Service, 1987, p. 403. : 뉴미디어, 1987. 12, p. 101에서 재인용.

주8) 지경용, “우리나라 기술정보유통단계의 개선방안”, 컴퓨터 월드 창간 2회기념 현상논문집, 1987. 11.

주9) 컴퓨터피아, 1987. 12, p. 26.

인정한다는 조치<sup>10)</sup>를 취하였으며, 다음으로 국방성(DOD)과 미항공우주국(NASA)의 위탁연구에 관한 논문의 입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또한 미국정부가 조성하여 개발한 특허의 실시권을 외국기업에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까지를 검토하게 되었다.<sup>11)</sup>

## 2) 80년대 지적소유권보호정책의 전개과정

미국은 1950~60년대에 국제무역에서 압도적인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었으나, 70년대에 들어와 철강, 자동차 등 종래의 기간산업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대폭적인 경상수지의 적자를 초래하였다. 특히 미국이 성역이라 여겼던 하이테크 산업분야에서도 1986년에는 수입초과 상태를 기록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미국경제의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첨단기술산업분야의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보호를 강화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의 증액,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감세, 기업 공동연구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완화,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완화, 첨단기술정보의 유출 억제 등의 관련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이 최근 미·일간의 하이테크 개발경쟁의 주역으로 등장하자 미국 정부는 새로운 통상정책의 주요내용에 지적소유권보호의 확대를 제시, 관계법규의 개정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79년의 “노우하우 보호를 위한 통일된 영업비밀규칙”의 작성, 1980년의 “저작권법” 제정, 1984년의 “반도체침보호법” 제정 및 “특허법”의 개정 등 일련의 법정비를 통하여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였다. 이어 레이건은 1985년 9월 통상정책에 관한 행동강령(Action Program)을 발표하면서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를 강조한 데 이어, 1986년 4월에는 미통상대표부(USTR)가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다국간협상 및 쌍무협상을 통하여 미국 정부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다.<sup>12)</sup>

그리하여 1987년 1월 레이건은 연두교서에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정책 목표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연구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국내적으로는 독금법을 완화하여 복수 기업의 공동연구를 위한 제휴를 인정하고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지적소유권,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하여만 혜택을 인정한다는 상호주의원칙을 강조한 것이다.<sup>13)</sup>

결국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개된 지적소유권 보호전략은 미국내의 연구개발과 시장개척 노력 및 예술적·지적인 창조활동을 촉진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함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풍부한 기술축적을 보호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도 제고되며 통상확대를 통하여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오늘날 통상전략과 지적소유권 전략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강한 협상무기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 다. 지적소유권 전략의 개요

#### 1) 통상법안에 나타난 통상전략과 지적소유권 전략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입법 추진중이던 70여개의 통상법안은 표4와 같이 상원

주10) 1982년 7월에는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보고서(Scientific Communication and National Security)에서 기초연구에 관한 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우위에 악영향을 미치며 오히려 입국자의 Visa제한 쪽이 유리하다고 기술한 바 있다.

주11) 牧野昇, 日米技術戦争, 日本経済新聞社, 1984. 4, p. 259.

주12)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는 1987년도에 특별보고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미국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형태의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는 몇 가지의 지적소유권에 대하여는 전혀 보호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보호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기술을 획득하거나 저작권 있는 작품을 복사하는 행위에 국가가 법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 생산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약품 등의 상품 판매시장을 해외로 확대하려 하는 경우 큰 장애가 된다. 정부는 실시 가능한 다국간무역협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지적소유권의 부적절한 보호에 기인한 자유무역 왜곡 활동이 근절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컴퓨터피아, 1987. 9, p. 98.)

주13) ユンピュタエージ社 編緝部, “国際競争力と基礎研究”, ユンピュトピア, 1987. 4, p. 69.

표 4. 단일안으로 되기 이전의 미국통상법안의 주요 내용

법령명	주요내용
1987년 통상국제경제정책법안 (HR.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항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4년 통상법 301조의 적용요건이 되는 외국의 불공정거래의 존재 인정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USTR에 이관한다.</li> <li>- 대통령은 USTR에 의한 결정 후의 일정기간 내에 보복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대통령의 재량권 제한).</li> </ul> </li> <li>○ 과잉혹자국에의 보복(게파르트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미 과잉 무역혹자국에 대하여 매년 10%의 혹자폭 삽감교섭을 행하고 교섭결렬의 경우에 대통령은 보복조치를 강구한다.</li> </ul> </li> <li>○ Escape Clau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강구할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USTR로 이관한다.</li> <li>- 위기적 상황이 존재할 때 30일 이내의 가결정에 근거한 수입규제를 발동한다.</li> <li>- USTR은 산업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산업의 문제점과 경쟁력 향상 조치에 관한 계획을 책정한다.</li> </ul> </li> <li>○ 전기통신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TR은 법안 성립후 180일 이내 외국의 전기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조사를 행한다.</li> <li>- 대통령은 18개월 혹은 12개월 이내에 전기통신시장을 폐쇄하고 있는 나라와 교섭을 진행하되 결렬시는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li> <li>- USTR은 전기통신에 관한 무역협정의 실시상태를 조사하여 그 적절한 실시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복조치를 강구한다.</li> </ul> </li> <li>○ 지적소유권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제소를 위한 요건 중 피해의 입증을 배제하여 그 보호를 강화한다.</li> </ul> </li> <li>○ 미국 금융기관의 시장참여 요구(슈마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금융기관에 국채입찰 등에서 평등한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나라의 금융기관에 미국 정부증권 공인취급 자격을 주지 않는다.</li> </ul> </li> <li>○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주식취득이 안정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무성이 조사, 필요한 경우는 규제한다.</li> </ul>
1987년 포괄무역법안 (S. 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대항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은 일본을 포함한 “저해무역(Adversarial Trade)” 관행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불공정무역장벽을 철회시킬 의무를 갖는다.</li> <li>- USTR은 자주적으로 301조에 관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은 301조에 근거하여 USTR의 조사개시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관세를 인상하여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를 행한다(기한은 7년).</li> </ul> </li> </ul> </li> <li>○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품에 1% 미만의 수입세를 과함으로써 무역경쟁력 강화 원조기금을 설치하고 노동자의 직업재훈련을 실시한다.</li> </ul> </li> <li>○ Escape Clau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규제의 적용신청자에 대하여 자기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구체안 제출을 의무화 한다.</li> <li>- 동조항의 적용 요건으로서 첫째 상대국의 수출산업 육성정책, 둘째 덤핑, 세째 미국 기업측의 연구개발비 유지가 곤란하다는 정황을 요건으로 추가한다.</li> <li>- 위기적 상황의 존재요건으로서 “중대한 수입증가”를 개정 완화한다.</li> </ul> </li> <li>○ 전기통신조항(렌포드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TR은 타국의 전기통신 시장의 개방상태에 관한 조사를 행한다.</li> </ul> </li> </ul>

법령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의 결과 그 나라가 미국과 동일한 정도로 전기통신시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대통령은 당해국과의 교섭에 들어간다. 18개월 이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은 보복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li> <li>- 이미 전기통신시장의 개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USTR이 4개월 이내에 그 준수상황을 조사하여 협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복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li> </ul> <p>○ 지적소유권의 보호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소유권이 침해되었을 시는 피해의 인정없이 대항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li> <li>- 대통령은 타국의 기술이전의 제한 철폐를 위한 교섭을 행함과 함께 USTR은 기술이전 상황을 감시한다.</li> </ul> <p>○ 반덤핑법의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제조 후의 조사 기간에 있어서 대미수출의 급증에 대하여 현행과 국내법을 염격히 적용한다.</li> </ul>
1987년무역, 고용, 생산 성법안 (정부안)	<p>○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항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1조에 상호주의를 도입하여 미국과 동일하게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는 교섭이 여의치 못한 경우 보복조치를 행한다.</li> <li>- 상대국과의 교섭기한은 최대 2년으로 한다.</li> </ul> <p>○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EC에의 고도기술 수출 금지의 완화</li> <li>- 10억弗의 기금을 창설하여 매년 70만명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li> </ul> <p>○ Escape Clause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조에 의한 업계구제의 최종년 한까지 경쟁력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을 인정한다.</li> </ul> <p>○ 지적소유권의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산업에의 피해입증 없이도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제한을 인정한다.</li> <li>- 기업 비밀정보의 공개를 제한한다.</li> </ul> <p>○ 반덤핑법의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덤플링법의 적용회피에 의한 수출을 금지한다.</li> </ul>

\* :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치의 강화

\*\* :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포함

\*\*\* : 수입품 급증에 의한 국내 산업의 피해구제 (1974년 통상법 201조의 강화)

\*\*\*\* :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치의 강화

\*\*\*\*\* : 수입품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구제 (1974년 통상법 201조의 강화)

안, 하원안, 행정부안 등 3 가지 안으로 개별 심의 되었으나 단일안으로 조정되어 1987년 7월 21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sup>14)</sup> 이 법안은 한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의 흑자감축을 겨냥한 것으로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의 보호무역조치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법 301조

의 강화와 관세법 337조의 개정이다. 단일안으로 확정되기 이전 통상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표 4 와 같다.

결국 근 3년을 끌었던 포괄무역법안<sup>15)</sup>은 1988년 4월 21일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하고, 이어 4월 27일에는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레이건의 거부권행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확정될 위기에 있다.

주14) 포괄무역법안은 1988년 4월 21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4월 27일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의회쪽의 법안심의절차가 완료되었다.

미국의 지적소유권 전략과 통상전략이 요약되어 있는 포괄무역법안은 유래없이 보호주의적 색채가 짙은 법률로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조항, 분야별 상호주의 규정, 안전보장상의 무역규제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대외무역정책에 대한 권한을 USTR과 ITC로 이관시킴으로써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반면 정책 자체의 힘은 극대화되어 신속한 보복이 가능해졌다.

둘째, 301조는 특정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자국내에 피해를 주면 당해 피해품목뿐만 아니라 그의 상대국의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계속하는 국가에 대한 통상법 301조의 발동 등의 보복조치를 의무화하여 협상 과정에서 자유재량권을 줄임으로써 불공정거래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의지를 담고 있다.

세째,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1930년의 관세법 337조(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대항조치 규정)의 개정이다. 현행법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이 수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으려면 저작권·특허권 등 관련법의 위반 사실과 함께 이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법안에서는 산업피해 입증의무를 면제시켜 관련법의 위반 사실만 입증되면 수입금지 등 각종 무역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네째, 안전보장상의 무역규제조치는 국방조항의 수정 강화, 외국인에 의한 미국국적 기업 매수 제한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에 의한 미국기업의 흡수합병·취득 등은 국가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합병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긴급구제의 경우 ITC의 피해 판정기간을 4개월로 하고 있으며, 환율조항도 신설하여 다변적인 협상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그외에도 전기통

신장비 무역에 대한 각국의 시장개방 문제, 제3국을 통한 우회 덤플수출 규제문제, 대공산권수출규제위원회(COCOM) 규정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문제 등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우선하는 각종의 보호주의적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 2) 미·일간의 기술마찰에서 나타난 네가지 통상전략유형

미국과 개발도상국 및 미국과 일본의 사이에 최근 발생한 지적소유권 분쟁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몇가지 미국 통상전략의 패턴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상대국의 법제도 및 관행을 변화시켜 기존의 국제법질서에 들어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이다. 이 방법은 극히 온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우나 미국은 국제조약 준수를 요구하면서 이를 수단으로 상대국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곧 국제조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이익 및 기업 이익은 확보되는 것이다.

둘째, 미국 자신이 몇가지면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현행의 국제법질서가 불리한 상황에 있고 국익 및 기업이익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확립을 제안하여 구체화하는 전략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통상교섭상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1988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GATT에 지적소유권에 관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설정을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략의 구체화이다.

세째, 미국내의 질서 또는 법을 상호주의 등의 명분으로 타국에 강요하여 통상교섭상의 우위와 이익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 전형적인 예는 미·일간 정부조달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기준인정” 문제이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기준 인정문제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의 기준을 公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제도가 외국제품에 대한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일본의 국내 기준을 미국의 표준에 일치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주15) 하원에서는 찬성 312표, 반대 107표로 재적의원 3분의 2선인 290표를 초과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법안 확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법안을 확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과시하였으며, 상원에서는 찬성 63대 반대 36으로 통과하였다. (매일경제, 1988년 4월 23일자 : 중앙일보, 1988년 4월 28일자)

네째, 미국내의 국내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생산된” 외국제품의 유입을 차별적으로 취급, 대응조치로서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상술한 포괄 무역법안은 여러가지 형태를 취하면서 이러한 규정을 담고 있다.

표 5. 미국의 통상정책 전략유형

유형	요점	통상정책 유형과 사례
Type - I	국제법규를 근거로 시장 참여를 시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인하 / 통신기기에 있어서 정부조달상의 무차별 원칙(일본전신전화(주) 조달)</li> <li>○ 저작권조약을 근거로 일본에 반도체회로 보호법을 제정케 함.</li> </ul>
Type - II	미국 주도로 국제규범을 설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루파이라운드 추진 &gt; 지적소유권 보호의 규범을 설정</li> <li>○ COCOM 협정에 의하여 일본에 기술이전을 통제함</li> </ul>
Type - III	상대국의 법제도에 관여 하여 미국에 유리한 제도정립을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정비 요구(일본, 한국, 브라질의 저작권법 개정 사례) *</li> <li>○ 기준인정 및 기준완화 요구(미일간 MOSS 협의 **)</li> </ul>
Type - IV	미국내의 통상관련법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법 301조에 의한 보복권한의 대통령에의 위임</li> <li>○ 반덤핑법 적용(반도체칩 보호법에 의한 일본 기업 및 한국 기업의 제소사례)</li> <li>○ 관세법 및 특허권법에 의한 산업 보호</li> <li>○ 저작권법의 적용</li> </ul>

\* : 미국은 의회자문위원회인 CONTU의 권고에 따라 1976년과 1980년 2회에 걸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그후 미국은 세계 각국에 압력 또는 권고를 통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를 유도한 결과 1984년에 오스트리아와 인도, 그리고 1985년에 일본 및 서독, 프랑스, 영국 등 유럽제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1986년에는 브라질과 우리나라에도 압력을 가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게 한 바 있다.

\*\* : MOSS 협의는 Market Oriented Sector Selective, 즉, 시장지향분야선택형 협의를 의미함.

이와 같은 미국 통상전략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기보다는 공정무역이라는 미명으로 자국의 이해를 타국에 강요하여 그것을 미국의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전후 세계경제의 주도적 이념이었던 “자유무역”은 배후로 후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또는 “공정한 무역”이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일본

일본의 경제기획청은 최근 “기술혁신 및 기술이

이상과 같은 미국의 통상전략에는 단순히 국제경쟁력을 높여 통상 확대를 도모하는 것만이 아니고 미국의 주도 아래 국제규범을 개편 및 신설함으로써 자국이 통상교섭상의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제국주의적인 전략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전과 지적소유권제도에 관한 조사”에 관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자본·재산 등 경제자원의 국제이전을 하는 입장이 된 일본이 새로운 기술조류에 입각하여 세계적인 기술개발·보급·이전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국제적인 규범을 창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일본의 대외기술교류 정책방향을 천명하였다.<sup>16)</sup>

한편으로 일본은 미국이 복합재료기술을 비롯하여 장래 실용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기술정보의 일본 유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구체화하자 그 대응책으로서 자주기술개발, 기술제휴, 기업의 현지진출, 정부차원의 협력을 기술정책의 가치

주16) 通産省, 通産省公報, 1987. 2. 12. : 정보산업, 1987. 3. 의 p. 44에서 재인용.

주17) 과학기술처/대한국토계획학회, 지역기술과 지역정보화 시책, 1987. 5. p. 17. : 또한 1985년부터 통산성은 테크노폴리스계획의 일부로서 테크노마트(Technomart; 기술거래시장)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기술교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개알선시스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국내 기술정보유통 구상에는 정부가 세제·금융면에서 축면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업자들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로 걸고 기술정보전략을 강화하고 있다.<sup>17)</sup> 일본의 한 보고서는 일본이 세계 과학기술정보 발생량의 22%를 점하고 있다고<sup>18)</sup> 발표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술정보 수출에 비하여 수입이 많은, 소위 정보입 초상태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하이테크 기술을 둘러싼 일미 기술분쟁 가운데에서 특기할 사실은 미국이 특히 상표권·특허권·저작권 등을 수단으로 하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이테크 기술의 특허분쟁을 보면 소송에 의하여 표면화되기 전에 일단 당사기업간의 교섭절차가 먼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미간의 특허분쟁의 경위를 보면

이와는 상이하다. 특히 미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막 후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일단 특허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있으면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표면화시켜 미국시장에의 제품수출을 정지시키고,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을 곤궁에 빠지게 하고 있다.<sup>19)</sup>

미국이 주목표로 하는 대상 분야는 업종·업계를 불문하고 하이테크 제품을 미국에 대량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며 미국 기업은 이러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과 상표권의 침해에 의한 관세법 337조 위반을 이유로 표6에서와 같이 ITC에 제소하는 케이스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표 5. 미일 반도체 무역마찰 일지

연 도	무 역 마 칠 내 용
1981. 3	○ 미국 반도체공업회(SIA)가 IC산업 진흥정책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바를 공표함.
1982. 1	○ 64K DRAM에서 일본이 70%의 세어를 점유함으로써 미국 업계가 혼란에 빠짐.
1983. 2	○ 일본의 반도체산업 정책을 비판하는 SIA 보고서가 발표됨.
1984. 10	○ 미국에서 반도체칩 보호법이 성립함(1985. 1 시행).
1985. 3	○ 미·일 동시에 반도체 관세를 철폐함.
1985. 여름	○ 미국 메이커에 의한 덤픽제조가 잇달아 일어남.
1986. 7	○ 미·일 반도체 협정이 타결됨.
1986. 12	○ 일본은 공정시장 가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SIA가 비난함.
1987. 1	○ 미국은 일본이 제3국에 반도체를 덤픽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비난함.
1987. 3	○ 미국은 일본이 덤픽판매를 자제하지 않을 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함.
1987. 4	○ 레이건은 미·일반도체 협정을 위반한 일본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함.

급기야 1987년 4월 17일 레이건은 “건전한 반도체산업의 육성이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밝히고 미·일 반도체 협정을 위반한 일본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선언했었는데 100% 보복관세의 대상은 퍼스컴과 전동용구, 18~20인치 컬러TV등 3품목이며 이를 품목의 1996년도 미국 수입실적은 3억달러에 달하였

다.<sup>21)</sup>

그 결과 일본 통산성은 미·일 반도체 분쟁 회피책으로써 주요 품목의 국내 생산량을 실질적으로 20%<sup>22)</sup> 감소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게 되었으며, 일본의 가전제품산업계는 보복조치의 대응으로 이미 미국 현지생산 또는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생산하여 미국 시장에 우회진출함으로써 무역마

주18) 村上 正一 外, “科学技術情報の国際的流通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情報管理, Vol. 29 No. 12, Mar. 1987, pp. 993~1009.

주19) 日米特許紛争, ニンピュトピア, 1987. 9, p. 114.

주20) 하이테크기술의 특징은 기술혁신의 속도가 급속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은 비교적 단기간의 신속한 조치로써 무역불공정 판정을 받아내어 통관 배제조치를 행함으로서 피고측인 일본 기업에 확실한 타격을 주기 위하여 ITC에서의 제소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 기업이 ITC에 제소된 사례는 1980년대에 들어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관세법 337조의 제소 사건은 1980년에 5건, 1981년에 8건, 1983년에 9건, 1984년에 9건).

주21) 신산업경영원, 뉴미디어, 1987. 5, p. 13. : 전자시보, 1987. 4. 2 및 1987. 4. 20일자 참조.

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하튼 일본 통산성의 생산 조정은 미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천에 옮긴 것이라 하나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행정지도란 강제력이 없는 만큼 각 제조업자가 통산성 지도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미·일간의 무역불균형 중 반도체 분야에서의 대미 수출초과액은 1985년 1,122억엔, 1986년에는 697억엔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간 9조 엔에 달하는 불균형 전체의 0.8~1.2%에 지나지 않는다.<sup>23)</sup> 이렇게 양국 무역불균형 전체규모에 비하여 작은 규모를 차지하는 반도체무역이 양국 무역 분쟁의 불씨로 번진 이유는 다음항의 설명에서 분명해진다.

### III. 미·일 기술분쟁의 원인 분석

미국이 현재 대폭적인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1980년대초 레이거노믹스의 실패로 인하여 미국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여 미국 경제의 체질악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의

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달러화의 약세와 엔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상품의 대외경쟁력이 감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일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을 양국의 기술개발정책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연구개발은 이때까지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여 왔다. 특히 21세기 초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혁신의 물결이<sup>24)</sup> 상승국면에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이에 대비한 사내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투자를 가속화하게 되었다.

즉,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1980년대부터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표7에서와 같이 전체산업의 연구개발비가 1980년도에 3조 1,423억엔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최고의 신장률을 기록하였고 1981년에도 3조 6,298억엔으로 15.5%가 증가, 1982년에는 4조 5,601억엔으로 12.9%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0%를 넘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

표 7. 일본기업의 연구개발

	연 구 개 발 비 (억엔)				전 년 대 비 증 가 율 (%)			
	1980	1981	1982	1983	1980	1981	1982	1983
전 산 업 *	31,423	36,298	40,390	45,601	17.9	15.5	11.3	12.9
기 계 공 업	2,189	2,421	2,810	3,117	17.8	10.6	16.1	10.9
전 기 기 계 공 업	8,172	10,062	11,764	14,612	17.7	23.1	16.9	20.4
수송 용 기 계 공 업	5,105	6,274	6,719	7,145	14.6	22.9	7.1	6.3
정 밀 기 계 공 업	993	1,268	1,342	1,588	28.6	27.6	5.9	18.3

\* :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기타 공익사업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 기업기술, 1987. 3., p. 34로부터 재작성

주22) 미·일 반도체 협정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1991년까지 5년간 생산 비용과 수출 가격을 감시하면서 외국산 반도체의 수입을 장려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 가격은 지켜지고 있으나, 일본의 반도체가 제3국에 덤핑판매되어 그것이 다시 공정시장가격보다싼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홀려온다는 것이다. 일본 통산성도 256KDRAM의 1월 생산량의 약 20%가 계열상사를 통하여 않고 감시가격규제를 피하여 소위 Grey Market으로 홀려가고 있다는 것을 조사·확인하였다 : 신산업경영원, 뉴미디어, 1987. 5., p. 14.

주23) 신산업경영원, 뉴미디어, 1987. 5., p. 14.

주24) K. Kondratiev의 장기파동설에 근거한 기술혁신에 의한 경기변동주기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것 : 지경용, 정보경제의 기반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일고찰, 전자통신, Vol. 8, No. 4,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7. 1.

졌던 것이다.<sup>25)</sup>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일기술분쟁의 발단인 반도체분쟁은 반도체 특유의 상품적 특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우려는 자국의 기술적 잠재력이 경쟁국보다 뒤떨어지는 것이며, 이는 국방정책상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사고가 미국의 기술정책에는 내재되어 있다. 더구나 반도체분쟁은 단순한 무역불균형 문제가 아니며 미국은 반도체산업을 국방상 관점에서 수많은 하이테크 기술 가운데서도 간파할 수 없는 전략적 기술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미국의 섬유·가전제품산업이 당했던 바와 같이 일본 반도체 제품의 미국내 진출을 방지하여 미국 반도체 산업이 空洞化하는 것을 결코 용납치 않겠다는 단호한 전략이다.<sup>26)</sup>

그리하여 미국 국방성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총 20억弗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1986년에 일본 후지쓰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훼어차일드 세미컨덕터를 매입하려던 사안에 대하여 극력 반대한 결과, 결국 동계회를 백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반도체는 군사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간의 합작회사 설립은 염하게 견제될 것이다.

이어 미국방성은 1987년 2월 “미국은 반도체에서 우위를 상실하고 있어 국가안전보장상 시급히 강화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메모리를 비롯한 군사목적용 반도체로 중요성이 높은 GaAs반도체의 생산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을 앞서고 있고, 공정기술에서도 Packaging 기술은 일본이 앞서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업계는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여 반도체 디바이스 효율을 높여 수율(收率)을 올리는 기초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sup>27)</sup>

그리하여 현재 미국 정부와 업계는 일본과의 반도체개발 경쟁에서 지지않으려고 정부와 일체가 되어 16M DRAM, 64M DRAM 등의 분야에서 1990년대를 목표로 연구개발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고 또한 미국에서는 수년전에 256K DRAM 분야에서 물러났던 기업들도 다시 1M DRAM, 4M DRAM 시장에 진출하는 등 일본 제조업체와의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결국 21세기 기술개발의 선두주자 자리를 넘보는 일본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전략과 국방전략상 반도체 기술개발의 리더쉽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기술개발정책이 충돌하여 양국의 기술분쟁으로 비화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IV. 결 어

개관한 바와 같이 미국의 지적소유권보호 강화 움직임은 단순히 복제품의 범람으로 인한 자국의 지적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만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 시스템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첫째, 미국 경제는 산업공동화 또는 탈공업화(D-industrialization) 단계에<sup>28)</sup> 돌입하고 있으며 GN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증대하고<sup>29)</sup>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자국내에서 상품을 제조하기보다는 타국으로 생산 시설과 생산 기술을 이전하여 상품을 제조해 함으로써 기

주25) 기업기술 자료과,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 동향”, 기업기술, 1987. 3, pp. 33-34.

주26) 신산업경영원, 뉴미디어, 1987. 5, p. 15.

주27) 신산업경영원, 뉴미디어, 1987. 5, p. 17.

주28) 미국내에서는 이러한 산업공동화현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측도 있다. 그 근거는 첫째, 미국 경제에 있어서 서비스부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는 서비스부문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높으며 노동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에 고용됨으로써 기인할뿐 제조업자체의 약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둘째, 해외 조달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상품 생산기반이 축소된다고 해도 이는 비교우위의 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분업의 진전이라는 당연한 경제 논리의 귀결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업차원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기획관리부문을 중심으로 한 본사와의 기능이 분화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정보센터로서 미국에 본사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산업공동화의 문제를 종래의 공업사회에서 고도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합리적 행동에 의해서 초래된 과도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술자산 판매수익을 높이고 판매시장도 확보하는 전략 전개의 결과이다(이 중요하고도 엄청난 경제구조 변화의 움직임을 필자는 “지식자본주의화”라 부르고 싶다). 이로 인해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행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대두하고 있고 그 결과 상대국에게 지적소유권보호를 강요하게 된 것이다.

둘째, 미국은 지적소유권과 국제통상문제를 결부시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국의 지적자산을 악용하려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적소유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려 하고 있으며 지적자산은 아직도 미국이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지적소유권을 무기로 하여 국제통상전략을 전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 현 레이건 행정부는 자유무역수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통상무역상의 보호주의는 강력히 배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회가 지적소유권을 일종의 통상전략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이것이 보호주의 대체물로서 무역상의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1988년 4월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의 포

괄무역법안은 레이건 대통령에 의하여 거부권이 행사되리라고 관측되지만 그것은 공장폐쇄와 알래스카의 석유수출제한을 규정한 두 조항 때문이며 기타 보호주의 조항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sup>30)</sup> 즉, 한국 등 대미 흑자국에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와 지적소유권보호를 강화한 관세법 337조 및 반덤핑 조항에 대하여는 레이건 행정부도 의회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적자산의 축적 규모가 2000년대 정보화사회에서 국부평가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필자의 망언일까? 그러나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경제성장의 목표가 “산업화”이고 그 애로요인이 “자본축적의 부족”이었다고 본다면, 정보화사회에서의 그것은 “정보화”이며 “지적자산의 축적 부족”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원 아래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기술혁신에 의한 성장전략의 패턴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체 기술개발과 선진기술 도입 및 개량을 통하여 국내 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I. 단행본

1. 과학기술처 정보산업담당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설명,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7. 4.
2. 박민승 외 2인, GATT를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질서의 전개방향과 우리의 대응,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984.
3. 임양택, 技術革新의 產業組織的 特性에 関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88. 4.
4.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자통신의 현황과 전망, 한국전자공업진흥회, 1988. 2.
5. 牧野昇, 日米技術戰爭, 日本經濟新聞社, 1984. 4.

6. O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 A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1986. 4.
7. 池庚鏞, “우리나라 技術情報流通段階의 改善方案, 컴퓨터월드 創刊 2주년기념 현상논문집, 컴퓨터정보사, 1987. 11

### II. 정기간행물

1. 방용태, 미국의 서비스산업 비대화와 탈공업화, 세계경제동향, 산업연구원, 1987. 7, pp. 32-40.
2. 電子時報社, 知的所有權 對応策 時急, 電子時報, 1988. 4. 28.
3. 池庚鏞, “情報經濟의 基盤形成過程에 있어서의 一考察(情報革命과 金融革命을 중심으로), 電子通信,

주29) 그러나 미국내에서는 차국무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하여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다. OTA는 앞으로 10~20년간 서비스무역의 신장률이 제조업 신장률을 상회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통상전략으로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미국 서비스 산업의 해외 시장 침투는 각국 경제에 혼란을 가중할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어 경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30) 한국경제신문, 1988. 5. 4.

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을 표시하나 이는 한일간의 꾸준한 교류증대, 기술축적, 신뢰를 바탕으로한 일본과의 비지니스를 통해 극복될 것이라 예견됨.

- 방문공장 선정은 일정 및 지역의 제한성, 우리측 단원의 방문희망공장은 다양화로 다소 애로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65%가 단원들의 요구에 부합되었음.

- 우리측 단원은 해외여행 초행자가 21명 (75%) 일본어 구사 불가능자가 22명 (79%) 인바, Mission을 통해 일본에 대한 관심고조, 업무기여의 향상 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일전담요원의 확보가 시

급히 요구됨)

- 양케이트 결과 향후 일본에서 同 Mission이 訪韓하였을 경우 우리측 단원의 45%가 공장방문을 혀용한다로 나타났고, 금후 일본과의 합작투자, 기술제휴 가능성에 대해서는 7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本会의 회원업체에 대한 对日 지원사업으로는 응답자의 73%가 对韓합작투자, 기술제휴 회망업체의 list-up 등 정보지원을 요구했음.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의 협력증진, 회원업체에 대한 정보지원, 한일양국기업에 대하여 實益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회와 외국관련기관과의 교류를 적극 수행해야 할 시기라고 봄.

#### P. 61에서 계속

10. 増田祐司, 米国の 知的所有権戦略と 通商戦略, ユンピュトピア, 1987. 9. pp. 98 - 101.
11. 増田祐司, 先端技術開発の 國際競争と 基本技術の 特許戦略, ユンピュトピア, 1987. 11, pp. 142 - 145.
12. 知的所有権を 考える, ユンピュトピア, 1988. 1.
13. 創造的 知的活動への 評価, ユンピュトピア, 1988. 1.
14. 通信政策局 國際企劃課, 貿易障壁に 関する USTR 報告書について, 電気通信時報, 1988. 3, pp. 22 - 27.
15. Greguras, M. 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USA, Information Age, Vol. 9, No. 4, Butterworth&Company Ltd., 1988. 10.
- 韓国電子通信研究所, Vol. 8, No. 4, 1987. 1.
4. 韓国經濟新聞社, 公訴権審査の 積滞と 深化, 韓国經濟新聞, 1988. 4. 24.
5. 佐藤佳男, 日米貿易個別事例, 月刊貿易と 産業, 1987. 8, pp. 32 - 35.
6. 名和小太郎, 知的所有権と 技術標準, 電気通信時報, 1987. 9, pp. 2 - 7.
7. 坂本栄, ハイテク 産業は 安全保障に 直結, 世界週報, 1987. 2. 24, pp. 24 - 29.
8. 福間宰, 日米ハイテク競争, ユンピュトピア, 1987. 11. pp. 120 - 121.
9. 増田祐司, 知的所有権, ユンピュトピア, 1987. 12, pp. 20 - 37.

